#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70

발의연월일: 2024. 12. 17.

발 의 자: 김소희·박준태·김위상

우재준 · 김정재 · 박형수

김성원 · 이양수 · 이헌승

성일종 • 조은희 • 백종헌

김상훈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또한 매년 증가하여 그 국가적 수요가 상당한 실정임.

한편 코로나 19 사태 이후 요양시설 면회가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밀집공간에서 모든 일상이 이뤄지는 요양시설 종사자의 입소자 폭행 ·방임·감금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피해자인 노인들의 경우 신체적·정신적·정서적·방임 및 폭행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등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만성적인 재학대 등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자격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

현행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성 범죄 및

아동 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종사자 및 시설 장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노인 요양기관의 종사자 및 시설의 장 결격 사유에도 동 범죄 전과를 저지른 자를 추가하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 화하고, 시설 입소자가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및 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2.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 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기요양기관의 종 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수급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

람

제37조제1항제2호의2 본문 중 "제32조의2"를 "제32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32조의2제7호"를 "제32조의2제1항제7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및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로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2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 제32조의2(결격사유)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 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 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른 성폭력범죄 및 「노인복지 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 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 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 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생략) 7.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신 설> 해당하는 사람은 장기요양기관 의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 조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 (생략)

2의2. <u>제32조의2</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

|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
| 로 재직하는 동안 수급자를        |
|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        |
|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 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노       |
| 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
|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
|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       |
| 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
| 된 사람                  |
| 세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     |
| 소 등) ①                |
|                       |
|                       |
|                       |
|                       |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
| 2의2. <u>제32조의2제1항</u> |
|                       |

만, 제32조의2제7호에 해당하 -. -----제32조의2제1항제7호 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 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8. (생 략)
- ② ~ ⑨ (생 략)

- 3. ~ 8. (현행과 같음)
- ② ~ ⑨ (현행과 같음)